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 3. 25. / (총 36매)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과 장	김 일 열	전 화	044-202-2320
담 당 자	박 성 원		044-202-2321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 확정

◇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5,077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조 3,088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

- * (증액 내용)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 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44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만0873	231만6059	298만7963	365만7218	431만8030	497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10,675명, +725억 원)
- (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258개소, 1,032명, +123억 원)
- (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천 명(5.8 → 6.3만 명), 5개월, +276억 원)
- (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 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 보육교사 추가 배치 지원(+3천 명, +108억 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 '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 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 편성 ('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 (+313억 원)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제공 (+147억 원)
-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 (+24억 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 (+480억 원)

□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 붙임 > 1.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 < 참고 > 사업별 참고자료

붙임 1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제1회 추경			주 요 내 역
	정부안 (A)	국회증감 (B)	확정 (C=A+B)	
계	12,265	+823	13,088	일자리 총 25,077명 * 사업지원인력: 790명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	4,066	△22	4,044	- 한시 생계지원 (80만가구 × 50만원) - 한시인력지원(456명)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379	△30	348	(인건비) 방역인력 5,300명, 337억원 (운영비) 11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410	△33	377	방역보조인력 지원 - 8,318개소, 총 5,375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123	-	123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관리 인력 한시 지원(1,032명)
자활사업 (자활근로)	331	△55	276	자활근로 5천명 확대(5.8만명→6.3만명, 5개월)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	-	2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420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2	-	242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4,160명)

구 분	'21년 제1회 추정			주 요 내 역
	정부안 (A)	국회증감 (B)	확정 (C=A+B)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108	-	108	▪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3천명 확대(5.8만명→6.1만명)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82	-	82	▪ 약 23,000개 약국에 체온계 설치 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	-	6,500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및 소독·폐쇄기관 손실 보상 * 1분기 4,000억원(예비비) 편성 이후 2~4분기 지급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	+313	313	▪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86.8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	+147	147	▪ 장애학생(3만명) 학습보조 돌봄 ▪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1,200명) 긴급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	+24	24	▪ 집단감염 발생 장애인거주시설에 분산조치 등 방역 비용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지원)	-	+480	480	▪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하기 위한 국비 반영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붙임 2

사업별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과장 (044-202-3051)	임동민 서기관 (044-202-3054) 전인수 사무관 (044-202-3058)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044-202-2470)	노호영 사무관 (044-202-2471)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요양보험운영과	김우중 과장 (044-202-3510)	이병희 사무관 (044-202-3512)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건강정책과	고형우 과장 (044-202-2810)	최지원 사무관 (044-202-2807)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김혜지 사무관 (044-202-3073)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방영식 팀장 (044-202-3378)	윤석범 사무관 (044-202-3361)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방영식 팀장 (044-202-3378)	박종용 사무관 (044-202-337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 (044-202-3560)	이희정 사무관 (044-202-3571)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044-202-2490)	강영아 서기관 (044-202-2486)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신현두 팀장 (044-202-1890)	류재현 사무관 (044-202-1885)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	정순길 팀장 (044-202-1770)	임화영 사무관 (044-202-1773)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백형기 과장 (044-202-3340)	문승원 사무관 (044-202-334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장애인권익 지원과	신용호 과장 (044-202-3310)	정진아 사무관 (044-202-3309)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044-202-2730)	장태영 사무관 (044-202-2745)

참고 1

한시 생계지원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지원

○ (지원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899

-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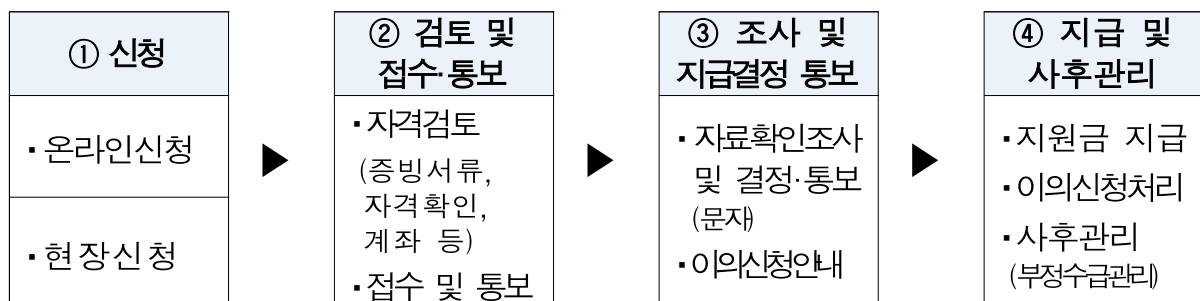
-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 (추진체계) 신청 접수, 조사 수행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복지부)-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내 T/F 구성하여 신속한 추진

○ (추진일정)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4월~5월중), 6월 중 지급 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긴급복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한시생계지원 비교]

구분	긴급복지 (완화된 기준 적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4차 추경)	한시생계지원
요건	○(소득) 기준 중위 75% ○(일반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금융재산)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등	○(소득) 기준 중위 75%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없음)	(左 同)
위기 사유	○실직·휴폐업·질병 등 + 지자체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소득 25%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중복 지원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 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 지원 불가	(左 同)	(左 同)
지원 단가	○ 1인 47.7만/2인 80.2만/3인 103.5만/4인 126.7만원 * 생계지원 기준	○ 1인 40만/2인 60만/3인 80만/4인 이상 100만원	○ 인원수 무관 - 가구당 50만원
예산 규모	○ ‘21년 1,856억원 편성 (12만 가구)	○ ‘20년 3,509억원 편성 (55만 가구)	○ 4,000억원 편성 (80만 가구)
집행 시기	○ 연중 지원 ※ 완화된 기준은 ‘21.6월 까지 연장 적용	○ ‘20.9.22(추경 통과) - 신청 : ‘20.10~11월 - 지급 : ‘20.12월	○ ‘21.3월 추경 통과 후 - 신청 : 4~5월 - 지급 : 6월 중

[긴급복지 제도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당초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1차 한시 완화(3.23.)	2억 5,7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3,600만원
2차 한시 완화(7.31.)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808만원)→

1차 완화 974만 원^(4인 가구)→ 2차 완화 1,231만원^(4인 가구/‘21년기준)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7천원 (4인기준)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참고 1-1

한시 생계지원 Q&A

1. 신청과 지급시기는?

- ☐ 타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4~5월 신청·접수(온라인* 및 현장접수**) →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임
- * 온라인 접수 : 복지로(4.22~5.21)
- ** 현장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4.26~5.21)

2. 기존 긴급복지 사업과의 관계는?

- ☐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충족 가구는 긴급복지 사업에서 우선 지원
- 긴급복지 수급 중인 가구는 「한시생계지원」 중복 수급 불가하며,
- 다만, 「한시생계지원」 수급 이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 가능함(한시생계지원 수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 긴급복지 심사 후 금융재산 기준 초과 탈락 가구는 「한시생계지원」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임

3. 버팀목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부처 사업과 「한시생계지원」 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 ☐ 금번 「한시생계지원」은 타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및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번 추경에 의한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지원 배제됨

4. 지원요건은?

- ☐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타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임

※ (지원요건) ❶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❷ 생계급여,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수혜가구 제외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계층

* 재산요건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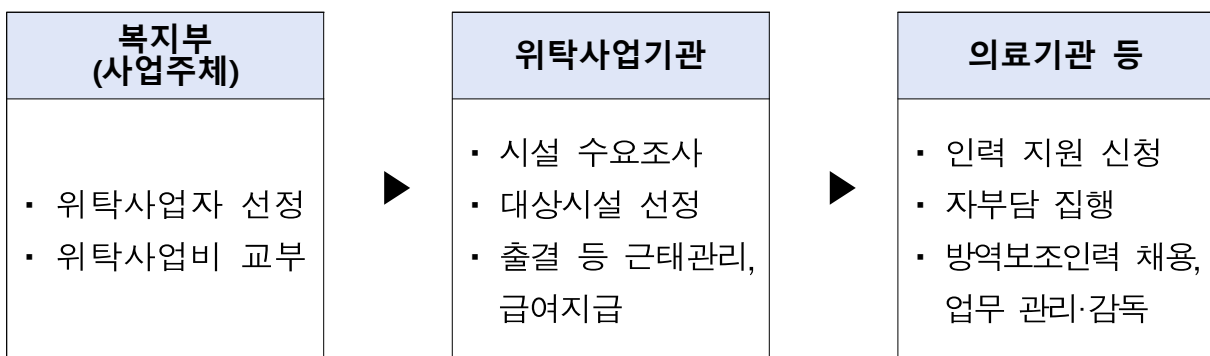
5. 소득감소의 증빙과 심사는?

- ☐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
- 소득감소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현재소득('21.1~4월)과 비교하는 과거 시점을 '19~'20년 내에서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기간 평균 등 다각적으로 인정하며
- 공적자료 제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임

참고 2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에 방역 보조인력을 지원, ①시설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②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며, ③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지원대상) 의료기관 등 4,141개소* 대상 방역인력 5,300명** 지원
 - * 병원급 의료기관 4,106개소, 지방의료원 35개소 등
 -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기관에는 더 많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우선 지원
- (채용기준)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 하되, 그 외 인력도 의료기관 방역을 위해 채용·배치할 예정 (의료기관 직접 채용)
- (지원방식) 민간위탁, 국고보조율 90%(자부담 10%)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위탁사업기관



참고 2-1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Q&A

1. 방역인력 배치 시기는?

- ☐ 위탁기관(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의료기관 방역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참여 기관 및 필요 인력을 확정하고,
- 4월 중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여 5월초부터 방역인력의 배치 및 방역업무 수행하도록 추진

* (방역인력) 5,300명, 의료기관 직접 채용, (지원인력) 98명, 위탁기관 채용

2. 2020년 방역지원 사업과의 차이점?

- ☐ 의료기관 직접 채용 및 방역인력 인건비의 일부 부담(10%)
- 방역인력의 채용 및 관리, 이직에 대한 충원 등 유연한 대처를 위해 채용방식을 변경*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방역인력 채용 기관(의료기관 등) 자부담 도입

* (20년) 위탁기관 일괄 채용 후 의료기관 배치 → (21년) 의료기관 직접 채용, 위탁기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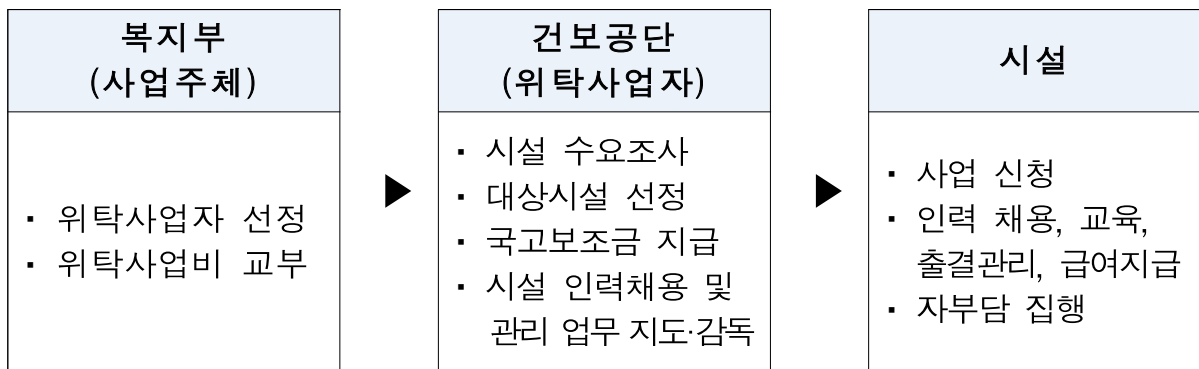
3. 방역인력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는?

- ☐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으며, 업무는 방역업무에 한정
- 업무 특성상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나, 그 외의 인력도 채용 가능
- ※ '20년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인력 중 사업종료('21.1.22.) 후 해당 의료기관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업무범위는 주로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업무 수행은 가능

참고 3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보조인력을 노인요양시설 등에 배치, 시설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지원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총 8,318개소 대상 방역인력 5,375명 지원
- (지원내역) 시설당 1명, 월 202만원* (1일 8시간 근무기준), 5개월
* 근로자 월 급여 182만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20만원
- (선정절차) 수요조사 후 지원대상 시설 5,375개소 선정('21.4월)
- (지원방식) 민간위탁, 국고보조율 90%(시설 자부담 10%)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위탁사업기관(건보공단)



참고 3-1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Q&A

1. 방역보조인력의 역할은?

- ☐ 면회실 관리, 시설 내 수시소독, 청결유지 등 방역지원 업무 수행

2. 인력지원 시설 선정절차는?

- ☐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대상 수요조사(4월), 지원 시설 선정(4월), 국고지원(4~1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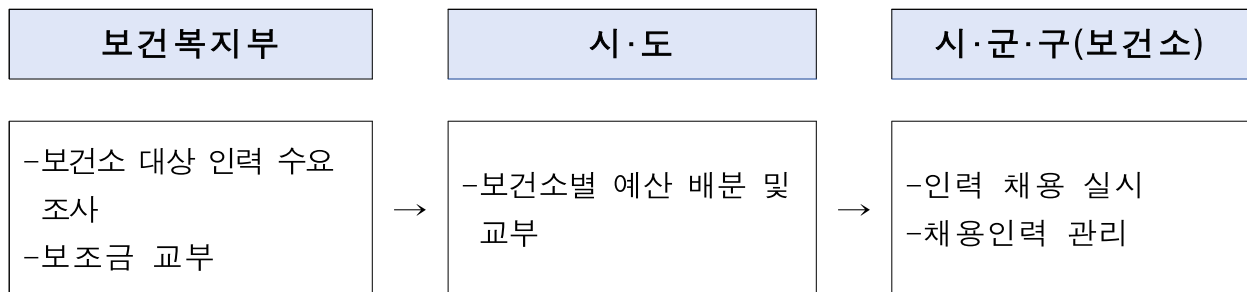
3. 인력 채용절차, 급여, 근무 기간은?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서 자체 채용 실시
- ☐ 방역보조인력 1인당 월 급여는 182만원(1일 8시간 근무기준)
 - 건보공단에서 시설에 국고 90%를 지원하면, 시설에서 자부담 10% 추가하여 인건비 지급
- ☐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5개월

참고 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사업목적)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증진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 한시적 인력 지원
- (지원대상)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총 1,032명*, 5개월 지원
 - (지원단가) 238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 가능
 - * 258개 보건소당 4명씩 지원, 국비 100% 보조
- (채용기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 (업무내용) 선별진료소 지원, 건강진단서(舊 보건증 발급), 건강증진 업무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
 - 보건소별 필요 업무, 직군 등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참고 4-1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Q&A

1. 보건소 인력지원은 언제부터 이뤄지는지?

○ 보건소에 4월 초 지원 예정

-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대비하여, 사전에 258개 보건소 대상 필요 인력 수요조사 기실시함
- 국회 통과 직후 수요조사 결과 등 반영하여, 보건소별 지원 규모 결정 및 예산집행 예정

2. 보건소별 지원 인원

○ 보건소별 평균 4명이나, 실제 지원 규모는 보건소 대상 수요조사 결과 및 '20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집행률 등 반영하여 보건소별 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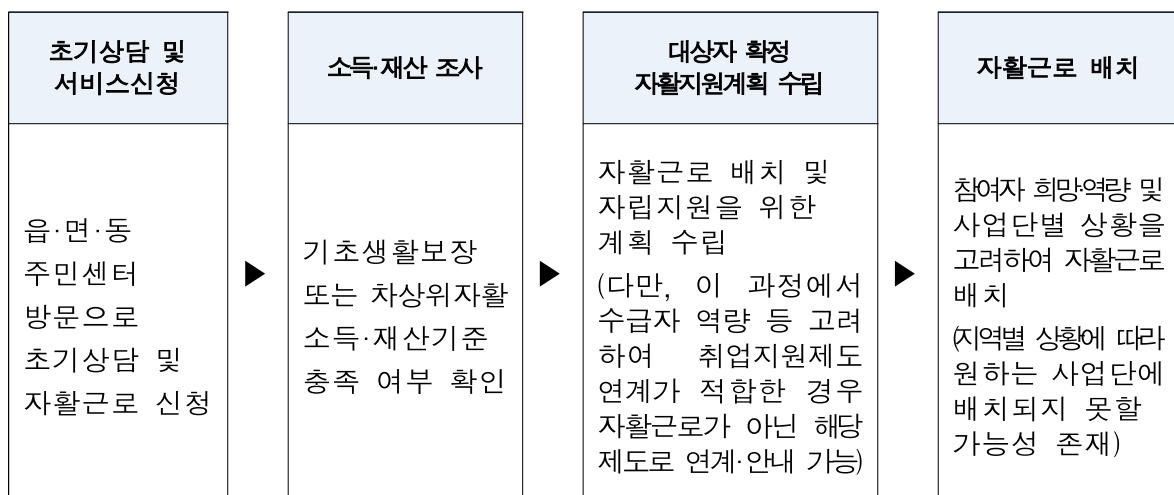
3.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 검체채취, 선별진료소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되, 코로나 19 대응지원으로 건강진단서(舊 보건증 발급), 건강증진 업무 등 기존 업무 공백 발생 시, 기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채용 가능

참고 5

자활사업

-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대상자라도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 (선정방식) 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 대상 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 결정
-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자활근로 참여* 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
 - * (참여업무 예시) 임가공, 집수리, 세탁, 청소, 음식물 제조, 재활용 등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 (급여) 유형별 5,848원~7,119원까지 상이(일 29,240~56,95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참고 5-1

자활사업 Q&A

1.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재산 요건 확인(필요시 조사 실시) 후 자활근로 신청 가능

※ 지역별로 자활근로 정원 초과 시 참여 마감되거나 대기 발생 가능

2. 신청 가능 기간과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대 참여기간은 60개월임

3. 누구나 신청 가능한지?

- ☐ 자활근로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소득·재산기준 해당자를 대상으로 함
 - 만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 가능여부가 다름
 - 또한, 수급자·차상위자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거나,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 불가

4.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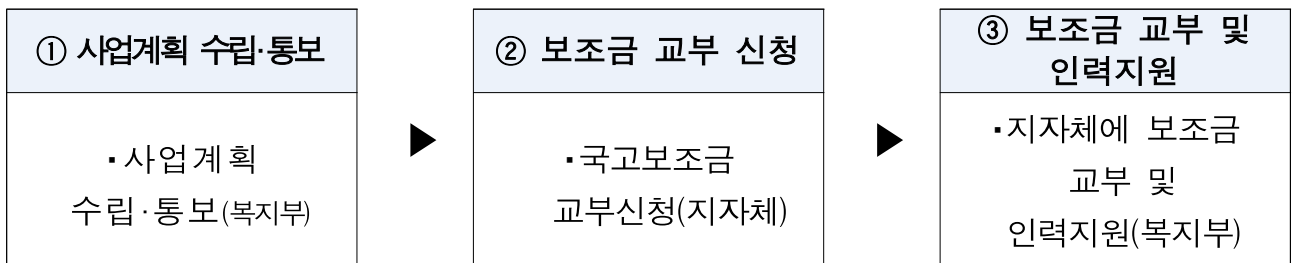
- ☐ 참여 사업단 유형별로 근무시간 및 급여가 다르며, 월 약 65만원~ 약 136만원까지 상이

※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업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원하는 사업단 배치가 어려울 수 있음

참고 6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지원
- (지원대상) '20.12월 기준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21년도 운영비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4,160개소)
- (지원금액) 다함께돌봄센터 24억원, 지역아동센터 242억 원
- (지원단가) 총 4,580명에게 월 202만원*, 6개월('21.上 중 신청) 지원
 - * 1,822,480원('21년 기준 최저임금) + 4대보험료
 - (다함께돌봄센터) 420명 × 월 202만원 × 6개월 × 48%
 - (지역아동센터) 4,160명 × 월 202만원 × 6개월 × 48%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50%)
- (지원방식) 돌봄인력 지원을 신청한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관할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선정
- 집행절차(안)



참고 6-1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Q&A

1. 지원금액 및 채용 시점은?

- 돌봄인력 1명당 월 202만원 지원
 - * 1,822,480원('21년 기준 최저임금) + 4대보험료
- 추경 편성 및 지자체 수요조사 등 기간을 고려하여, 4~5월 중 채용 공고 등 절차 시작될 것으로 예상

2. 지원 인원 및 역할은?

- '20.12월 말 기준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수 424개소
 - 현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에 센터당 평균 2명 근무 중이며, 추가로 1명씩 인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배치할 예정

참고 6-2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Q&A

1. 지원금액 및 채용 시점은?

- 돌봄인력 1명당 월 202만원 지원
 - * 1,822,480원('21년 기준 최저임금) + 4대 보험료
- 추경 편성 및 지자체 수요조사 등 기간을 고려하여, 4~5월 중 지자체별로 채용 공고 등 절차 시작될 것으로 예상

2. 지원 인원 및 역할은?

- '20.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수 4,264개소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약 1명의 추가 인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배치할 예정

참고 7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 (사업목적) 담임교사 겸임 연장보육반에 연장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참고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

-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분)으로 구분 운영
- 연장보육 시간에 연장전담교사 배치 및 연장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보육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3천명)
- (지원요건) ①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③ 연장반 이용시간 충족 ④ 전자출결시스템 이용

- (지원금액) 10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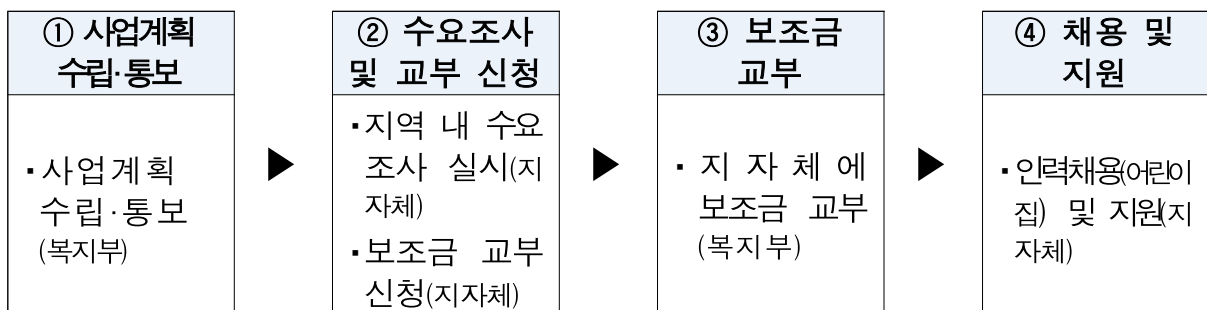
- 인건비 : 1,011천원 × 3,000명 × 6개월 × 보조율 50.8% = 9,244,584천원
- 사용자부담금 : 9,244,584천원 × 18.285% × 30% = 507,112천원
- 담임교사지원비 : 3,000명 × 6개월 × 12만원 × 보조율 50.8% = 1,097,280천원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서울 20%, 지방 50%, 차등보조율 적용)

- (지원방식) 어린이집 → 지자체(시군구) 신청, 지자체 선정 지원

*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집행절차)



참고 7-1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Q&A

1. 최근 3년간 보조·연장보육교사 지원 인원 및 예산

지원인원(명)	'19년	'20년(본예산)	'20년(추경)	'21년
보조교사	40,000	30,000	27,000	28,000
연장보육교사	-	22,000	25,000	30,000

2. 지원금액 및 채용 시점은?

- (지원금액) 월 101.1만원(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 담임수당 월 12만원, 사용자부담금(30%) 추가 지원
- (집행계획) 기존 예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및 교부(복지부, 4~6월), 대상 어린이집 선정(지자체, 5월), 채용(어린이집, 6월) 등 절차 진행 계획

3.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반별정원) 0세반 3명,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 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 0세반 2명, 영아반 3명, 유아반 8명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충족
* 0세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참고 8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 (사업 목적)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약국 내 비대면 체온측정기 설치를 지원
 - 이용자 및 근무직원 등에 대한 감염예방 및 발열환자 조기발견과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 효과 기대
- (사업주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 (지원방식) 민간보조 (국고보조율 90%)
- (지원대상) 약 23,000개 약국
- (지원금액) 8,160백만원
 - 비대면 체온계 구성 : 체온측정기 + 거치대
 - * 43.8만원 × 2.3만개(약국 수) × 90%(보조율) × 90%(신청률)
- (지원절차) 약국에서 대한약사회에 신청 → (대한약사회) 구매계획 제출 → (복지부) 보조금 교부 → (대한약사회) 체온계 구매·공급

참고 8-1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Q&A

1. 약국에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는 이유는?

- 약국은 처방약 조제나 일반의약품 구매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이나,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환자도 방문할 수 있어서 감염관리가 필요하므로 체온 측정이 중요
- 약국은 작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 마스크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 지금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방문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고 있음
- 집단 면역 형성 등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는 약국의 방역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으로 비대면 체온계 지원이 필요

2. 약국에 체온계 설치 지원 방식은?

-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에 수요 조사(4월) 시 체온계 설치를 신청
 -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체온계 가격의 90%를 국가에서 보조

참고 9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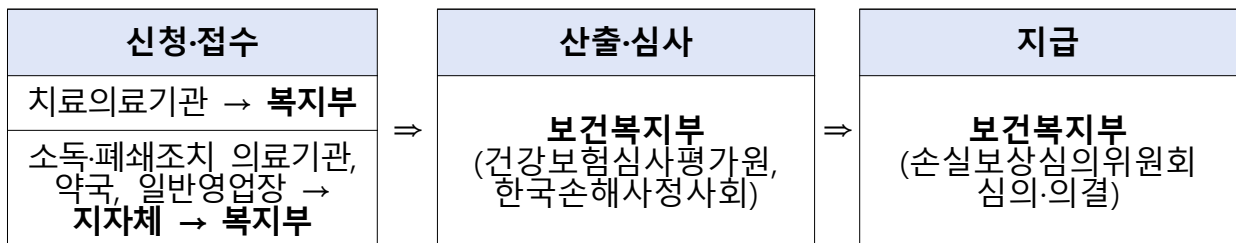
- (원칙) 코로나19 환자치료 및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환자치료 및 방역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 보상
- (대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의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

□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21년 2월말 기준 총 13,260억원 지급('20.3월~'21.2월)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관(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163개소) 등 총 377개소 12,683억원 지급
 - (폐쇄·소독조치기관) 의료기관(1,973개소), 약국(1,235개소), 일반영업장 (11,087개소) 등 총 14,342개소 577억원 지급

□ 청구 및 지급 절차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매월 초,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 받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손실보상 지급



참고 9-1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Q&A

1. 추경 편성 예산만으로 향후 손실보상이 충분한지?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을 감안, 전년도 지급(9,399억원) 수준으로 손실보상 예산 편성
 - '20년 대비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10% 인상 등 고려, 既 확보 예비비 4,000억원 포함 1조 500억원 편성
- 추경 예산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기 위함이며,
 - 예상치 못한 대유행 등의 발생으로 예산 부족 시 추가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 추진
- * '20년도 손실보상 예산도 추경 3,500억원 이외에도 예비비 5,514억원, 부내 자체 이용 385억원 등을 통해 자원 마련

참고 10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 (사업목적)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대면 노동시 감염위험 및 구매 비용부담 경감

- (지원대상) 취약계층 돌봄인력 868,4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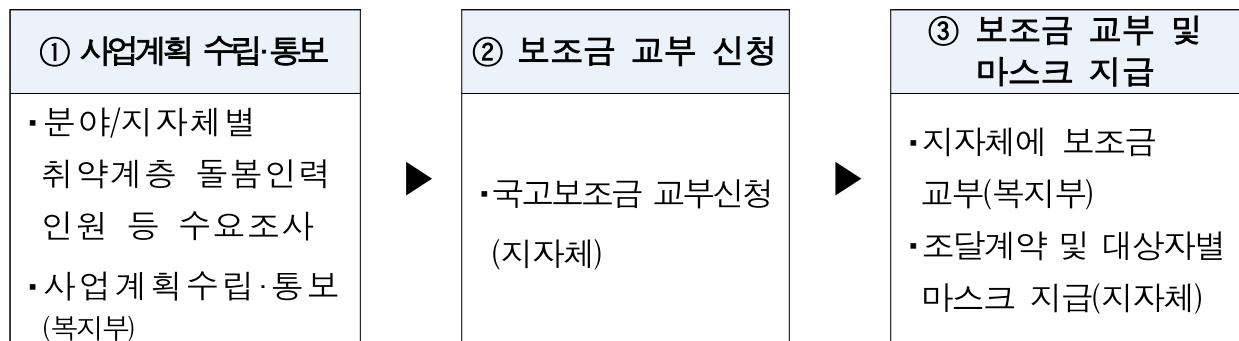
(단위 : 명)

분야	취약계층 돌봄인력 구분	인원
계	-	868,450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360,000
	장애인활동지원사	84,900
	장애아돌봄지원사	2,6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7,350
	보육교사	325,700
	노인돌봄종사자	31,300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4,800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18,400
보건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3,400

- (지원내역)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80매/인) 지원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100%

- 집행절차(안)



참고 10-1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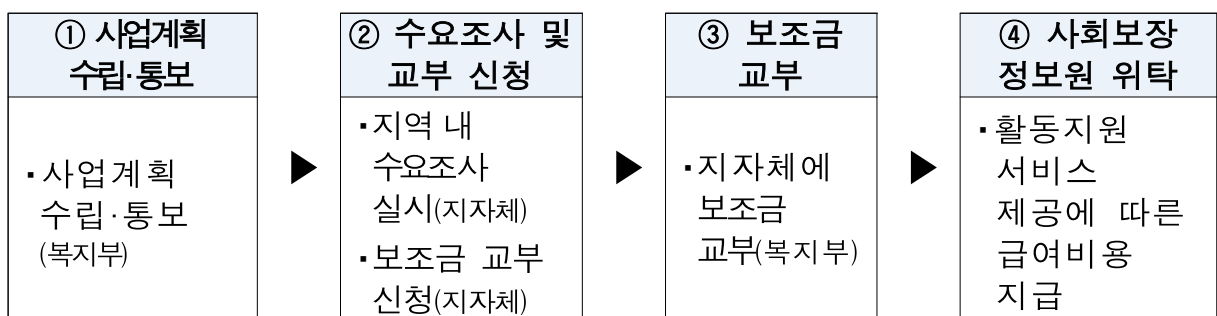
1.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
 - 취약계층 돌봄인력 상당수는 필수적인 서비스와 핵심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노동을 하고 있음
- ⇒ 취약계층 돌봄인력의 밀접노동시 감염위험 예방 및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 경감이 필요한 만큼 분야별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급필요

참고 11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 시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긴급지원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학생(30천명) ②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 분산조치된 장애인(1.2천명)
- (지원시간) ① 장애학생 월 40시간(6개월), ② 격리시설 분산조치 장애인 120시간(1회)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율 적용)
- (지원방식) 대상자→지자체(시·군·구) 신청(대리신청 가능), 선정→활동지원급여 발생→활동지원사 파견 요청(활동지원기관)
- (집행절차)



참고 11-1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Q&A

1. 대상인원 및 선정 기준

- 장애학생 특별돌봄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분산조치 장애인 긴급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하여 격리시설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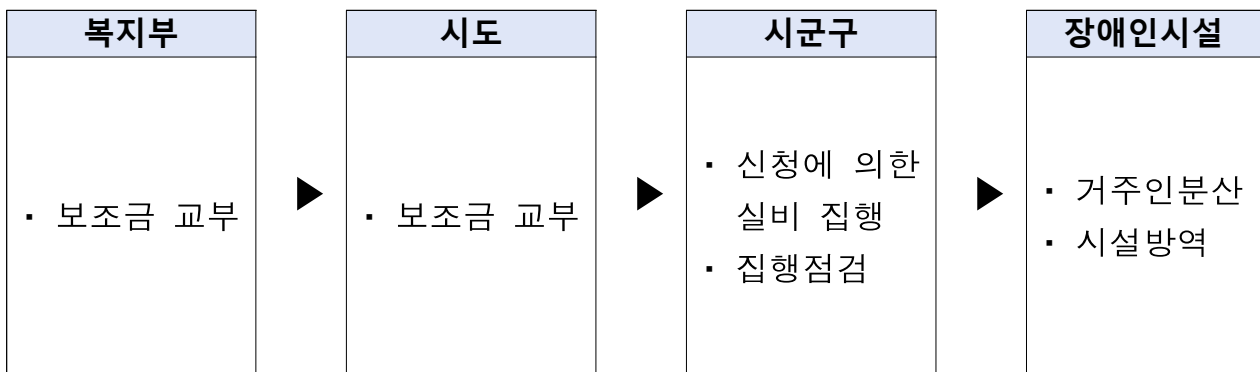
2. 신청과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 장애학생 특별돌봄 지원은 4월 중 신청·접수를 개시하여 5월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
- 분산조치 장애인 긴급지원은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속 지원(분산조치 익일 이내)

참고 12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 (사업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분산과 적절한 보호, 방역 등을 위한 시설 운영비 한시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518개소
- (지원기준)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거주인 분산비용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사업주체) 시도 및 시군구
- (지원방식) 지자체보조 (국고보조율 67%)
- (지원절차)



참고 12-1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Q&A

1. 지원이 가능한 시설 제한이 있는지?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거주인이나 종사자 구분 없이 여러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거나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지원 신청 가능

2. 한시지원 예산의 사용 범위는?

- ☐ 거주장애인을 신속히 분산하기 위한 임대료, 시설 내 돌봄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종사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방역비용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된 비용이면 가능함

3. 신청 및 집행 절차는?

- ☐ 시설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지침 및 장애인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청
- ☐ 시군구청장은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실 소요비용 지원

참고 1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등에 투입된 원내소속 인력
- (지원내용)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지원방식)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

참고 13-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Q&A

1. 그간 정부가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 현황은?

- '20년 제3~4회 추경을 통하여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상담 치유비용 수당지급
 - (대상) '20.1~5월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한 원소속 의료인력
 - (편성액) '20년 제3회 추경 120억원, '20년 제4회 추경 179억원
 - (집행) '20.10월 지자체 교부(집행율 95.4%)
 - 지급단가 (단위 : 원)

직역별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방역인력
1일당	39,600	39,600	39,600	28,000	28,000	20,000